

[별표 3] <개정 2016. 12. 30.>

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및 인원(제16조 관련)

구분		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(이하 "외항선"이라 한다)의 사업장	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(이하 "내항선"이라 한다)의 사업장
경력 기준	안전관리 책임자	<p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2급 항해사, 2급 기관사 또는 2급 운항사 이상의 면허를 가지고 외항선 또는 해당 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 2. 외항선 안전관리자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 	
	안전관리자	<p>3급 항해사, 3급 기관사 또는 3급 운항사 이상의 면허를 가지고 외항선 또는 해당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</p>	<p>4급 항해사, 4급 기관사 또는 4급 운항사 이상의 면허를 가지고 선박 또는 해당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</p>
자격 기준	안전관리 책임자	<p>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16시간 이상 수료한 사람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안전관리체계 수립·운영 관련 국제협약 및 국내 법령 2. 조사, 질문, 평가 등 심사기법 및 안전경영의 기술 3.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내부 심사의 이론 및 기법 4. 해운·선박운항의 지식 및 육해상 직원 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	<p>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14시간 이상 수료한 사람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안전관리체계 수립·운영 관련 국제협약 및 국내법령 2. 조사, 질문, 평가 등 심사기법 및 안전경영의 기술 3.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내부 심사의 이론 및 기법 4. 해운·선박운항의 지식 및 육해상 직원 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
	안전관리자	<p>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14시간 이상 수료한 사람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안전관리체계 수립·운영 관련 국제협약 및 국내법령 2. 조사, 질문, 평가 등 심사기법 및 안전경영의 기술 	<p>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12시간 이상 수료한 사람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안전관리체계 수립·운영 관련 국제협약 및 국내법령 2. 조사, 질문, 평가 등 심사기법 및 안전경영의 기술 3.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내부 심사의 이론 및 기법

		3.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내부 심사의 이론 및 기법	부 심사의 이론 및 기법
	안전관리 책임자	1명 이상	1명 이상
인원	안전관리자	4척 이하: 2척당 1명 이상	8척 이하: 4척당 1명 이상 9척 이상 15척 이하: 5척당 1명 이상
		5척 이상: 3척당 1명 이상	16척 이상: 6척당 1명 이상

비고

1.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은 위 표에 따른 경력기준 및 교육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
2. 위 표의 근무경력에는 1년 이상의 승선경력을 포함하여야 한다.
3. 위 표의 교육기준에 따른 교육은 정부대행기관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.
4.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다.
5. 사업장 소속 선박이 1척(내항선은 2척 이하)인 경우에는 선박소유자가 경력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여도 안전관리책임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
6. 하나의 사업장에 외항선과 내항선이 동시에 있는 경우의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및 인원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.
 - 가. 안전관리책임자: 외항선의 기준을 적용한다.
 - 나. 안전관리자: 내항선 및 외항선의 자격기준 및 인원을 각각 적용한다.